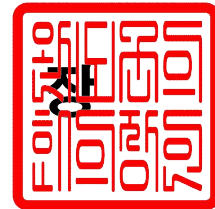


완도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완도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조영식 의원

3. 제정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4조)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및 절차(안 제5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6조 ~ 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 협의결과의 이행
(안 제12조 ~ 제14조)
-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활용, 수당 지급 및 비밀유지(안 제16조 ~ 제18조)

5.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6. 조례안예고기간: 2026. 9. 23. ~ 2026. 9. 27.(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8,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전화: 061-550-5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완도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군이 수립·추진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 및 시책 등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갈등으로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군민의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6.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그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갈등요인을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갈등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갈등관리 및 갈등조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률·행정·언론·주민자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갈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심의·자문 결과의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정책의 수립·추

진 과정에서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론조사, 토론회 등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갈등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표자
2.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갈등관리 및 갈등조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

이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임기는 해당 갈등에 대한 조정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⑦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조정이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⑧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협의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그 밖에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⑩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표자는 해당 갈등의 조정 및 합의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척되지 아니한다.

제13조(협의회의 활동) 협의회는 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갈등의 원인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조사·분석
2.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4. 갈등 당사자 간 합의안 마련 및 조정
5. 그 밖에 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협의결과의 이행)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합의에 참여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와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활용)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갈등 예방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등 갈등관리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